

노동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 직장 내 괴롭힘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은  
어떠신가요?



2019년 7월 16일 부터 시행 된

# 직장 내 괴롭힘 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기간 (일회적/단기적/지속적)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 문제된 행위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 함께 풀어봐요, OX 퀴즈



후배가 선배를 괴롭혀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직장 내 권력이  
후배가 선배보다 우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질책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모욕감을 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면  
그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상사가 자꾸 회식자리를  
강요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 인가요?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어떻게 다를까요?

##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 ✓ 성희롱은 '성적인(sexual)' 의미가 담긴 언동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여성 비하, 성역할 강요 등 '젠더(gender)' 괴롭힘은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 ✓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성희롱 판례 등을 참고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법

직원 간 괴롭힘

직장 내 고충처리부서 등에 신고

직장 내 조사 및 행위자 징계 또는  
재발방지 약속 등 조치

사용자가  
노동자를 폭행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

직장 내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등 범죄

경찰에 신고

형법에 의한 범죄사건으로 처리

“  
**우리 모두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여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보아요!**  
”

